

16세기 조선 사회 속의 여성

— ‘親迎制’ 시행 이전과 이후 : 무엇이 달라졌는가?

북경대학교

상명명

1. 서론

한국 사람들은 결혼을 말할 때 늘 ‘장가 든다’와 ‘시집 간다’라는 관용구를 사용한다. 두 관용구는 모두 ‘결혼하다’란 의미를 갖지만, 실제 구사할 때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말해야 한다. 남자의 경우에는 ‘장가 든다’이며 여자의 경우에는 ‘시집 간다’이다. 그런데 필자와 같은 외국인 학습자들은 이 관용구를 배울 때 선생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 ‘남녀가 이미 부부가 되었는데, 왜 따로따로 사는가? 신부는 왜 혼자 시집에 가서 생활하는가, 신랑은 왜 장가를 가는가, 둘이 한데 같이 사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외국인 학습자는 한국 전통 혼례 문화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과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이다. 한국 풍속에는 취처(娶妻)하는 것을 일컬어 ‘장가(丈家)’든다고 하는데, 장가는 곧 처가(妻家)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장가를 드는 것은 곧 처가에 든다는 뜻이다.¹ 시집은 시택(媿宅), 즉 결혼한 남자의 집을 말한다. 결혼을 하면 여자가 남자의 집에 들어가 산다. 그리고 결혼 후에 처가에서 생활한다면 ‘처가살이’라고 하며 시집에서 산다면 ‘시집살이’라고 부른다. 이상의 관용구는 한국 혼속 문화 변천을 잘 반영하고 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한국 처가살이의 기원은 고구려 서옥제(婿屋制)²에서 찾을 수 있다. 결혼식을 올리고 사위는 처가의 서옥에 살다가 자식이 크면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풍속이다. 이 풍속은 고려시대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 또는 남귀여가혼(男歸女家婚)으로 이어졌다. 말그대로 ‘남자가 아내의 집으로 가는 혼인’이었다.

그런데 고려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전래와 더불어 가부장적인 유교철학에 심취하기 시작한 사대부층에서, 서류부가는 정도(正道)가 아니므로 가족생활의 윤리(倫理)를 우려한 기록이 있다.

정도전(鄭道傳)은 그의 저서 『삼봉집(三峰集)』 卷7 婚姻條에서 「친영(親迎)의 禮를 폐하고 남귀여가(男歸女家)의 범을 행하니 부인이 무지(無知)하여 그 부모의 사랑을 믿고 남편을 가버이하고 교만과 투기하는 마음이 날로 자라 줄지에 반목하며 가도(家道)가 영락하게 되는 길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래(舊來)의 婚俗을 비판하고 새로운 혼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³ 즉 혼례를 치르면 주자가례에 의거해서 신부를 신랑의 집에서 친영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사대주의(事大主義)에 기울고 『주자가례』를 절대적인 규범으로 여기던 유학자들은 조선왕조 초기부터 혼인의례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가장 유교적 특성을 잘 드러내는 친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조선왕조 중기까지 남귀여가혼은 여전히 사회전반에 정착되어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닌

¹ 金宅奎·成炳禧, 『韓國民俗研究論文選』, 一潮閣, 1982, P.202

² 『三國志·魏書·東夷傳』에서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라고 기록하고 있다.

³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婿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P.152

제도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런 전통적인 혼인 제도에서 여성의 지위는 남자와 대등하였다. 그러나 명종대(明宗,1545-1567)에 이르러 고유 혼속과 절충된 반친영(半親迎)으로 변형되었다가 그 후 친영제로 정착되어 갔다.

혼속 양식이 바뀌는 동안 여성의 생활 양식이나 가정에서의 지위도 변화하였다. 특히 친영례 실시 이후 조선 여성들의 전통적인 처가살이는 시집살이로 변하였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전래된 성리학이 조선 사회에 보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 역시 현저히 떨어지고 말았다.

이 혼속 변화가 조선 여성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하여 16 세기를 살았던 대표적인 여성을 사례로 들어 분석해 보았다. 16 세기를 살았던 조선의 여성은 다른 시대의 여성보다 훨씬 많은 변화를 감수했다. 친영제가 도입되기 이전의 신사임당(申師任堂,1504-1551), 황진이(黃眞伊,1506-1544)보다 친영제 도입 이후에 활약한 여류시인 이옥봉(李玉峰,1550-1600) 과 허난설헌(許蘭雪軒,1563-1589) 등이 그러하다.

16 세기 전기에 사는 신사임당은 여자로서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에 대한 자료나 이야기도 없고 오히려 남편에게 혼계를 하기도 하고 아들의 교육도 거의 도맡아 했으며, 결혼 후에도 친정에서 지내는 등의 행적이 보이는 반면, 16 세기 후기에 사는 허난설헌은 여자로서 태어나 얼마나 고충을 겪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남겼다. 두 여성에게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친영제가 반친영제(半親迎制)로 변화하고 정착한 후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조선중기까지 여성은 결혼 후 그 여성의 아이가 성장하기 까지 친정에서 생활한다. 따라서 친정부모과 함께 사는 여성(딸)은 '시집살이'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허난설헌과 허균(許筠)의 글들을 보면 허난설헌의 어린 시절까지는 '처가살이'가 존재하였다. 따라서 허난설헌과 허균 또한 이이(李珣)처럼 외갓집에서 자랐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허난설헌의 세대부터 갑자기 '시집살이'가 시작되었다. 역사적으로 조선전기에서 조선중기로 오면서 사회 지배 체제가 확고해지고 성리학 사상이 뿌리를 내리면서 조선 지배층의 성리학에 의한 여성 지배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처가살이'가 '시집살이'로 바뀌게 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관점을 실증적으로 논술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가 갖는 분과 학문의 벽을 깨고 역사, 사상, 문화, 한문학, 민속의 전 범주에서 다양한 문헌의 인용과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충실한 자료를 통하여 16 세기 조선 여성의 지위 변화도 보여줄 것이다.

2. 조선 성리학의 보급과 여성

1) 성리학의 정착과 신분사회

유교(儒敎)가 언제 한반도에 전해졌는지 그 문헌 기록이 없어 분명치 않으나 『삼국사기(三國史記)』⁴를 통해 삼국시대에 이미 전래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남송(南宋)의 성리학(性理學)이라 불리는 신유학(新儒學)이 고려말인 13 세기 말엽에 일부 지식인들의 소개를 통하여 한반도에 전래되었다. 그 같은 변화의 한 가운데에는 불교가 우월한 위상을 차지하던 고려 사회에서 새로운

⁴ 『삼국사기』를 보면 372년인 고구려의 소수림왕 2년에 太學을 세워 귀족의 자제들에게 경서를 가르쳤다고 하나 이 태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은 알 수가 없다.

유학으로서의 성리학(주자학) 내지 신유학을 표방한 조선 사회로의 이행이 자리잡고 있다.⁵

그러나 성리학을 국교(國敎)로 여겼던 사대부들은 성리학의 본질을 이해하기 보다는 성리학의 명분론(名分論)을 내세워 조선건국의 당위성과 훈구세력으로 성장한 그들의 입장을 옹호하는데 급급하였다.

조선조 전기부터 왕실과 사대부들이 표방한 정치적 지도이념이나 제도의 측면에서는 성리학적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민중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 풍속 습관의 변화는 정치제도의 경우처럼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성리학이 조선시대 지도이념으로 그 위치를 공고히 한 것은 조선 전기부터였다고 해도 그것이 실제로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⁶ 16 세기에 들어와서야 『주자가례』와 『소학(小學)』 등 조선시대 사회 윤리 실천규범서가 보통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 겨우 정착되었다.

그리고 명분론을 강조한 유교는 인간에 대하여 모두 동일한 존재로 보지 않고 차등이 있는 존재로 파악하고 있다. 신분사회에서 유교는 인간의 동일성이 아니라 유별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제도와 예절, 주거와 혼인이 신분에 따라 규정되고 구분되고 있었다.

혼인은 가족 형성의 시초이며 혼인제도는 그 사회의 전통, 관습, 사회제도 등을 바탕으로 형성되므로 철저한 계급사회인 조선시대의 혼인제도는 계급유지의 목적에 적합한 계급혼(階級婚)만이 인정되었다.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선 시대에는 결혼의 대상을 선택할 때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하지 않고 가족의 이익을 먼저 고려했다. 그러므로 조선 시대의 혼인은 가족의 지위나 이익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였다.

계급혼의 역사는 삼국시대의 족내혼(族內婚)에 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고려 시대부터 계급이 다른 자와의 혼인금지가 명문화되었고 조선 시대는 계급혼을 법령으로 지정하였다. 왕실(王室)과 서민(庶民), 양반귀족(兩班貴族)과 평민(平民), 양민(良民)과 천민(賤民), 적자녀(嫡子女)와 서자녀(庶子女) 사이에는 통혼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또한 불당시(不當視) 되었다. 이런 계급혼 제도가 있으므로 양가가 혼인을 맺기 전에 서로의 신분을 고려해야 했다. 다시 말하면 혼인제도는 신분제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었기 때문에 여성의 혼인을 실제적으로 고찰하려면 여성의 신분 혹은 출신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⁷

다음으로 조선시대의 신분계층을 간단히 소개할 것이다.

조선의 신분계층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된다. 양반(兩班), 중인(中人), 양인(良人), 천인(賤人)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신분의 구분은 고려시대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반은 일반적으로 상층지배신분층을 나타내는 개념이나, 文·武의 두 반열(班列)의 특정신분층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변질되었다. 양반이란 용어 외에 사대부(士大夫)와 사족(士族)같은 명칭이 사용되었다. 사대부는 사(士)와 대부(大夫)의 합성어로, 사는 오품(五品) 이하의 문관(文官)을 대부는 사품(四品) 이상의 문관을 뜻한다.

중인은 조선 시대에, 양반과 평민의 중간에 있던 신분 계급이다. 세습적인

⁵ 김석근, 「대승불교에서 주자학으로」, 『정치사상연구』 1, 1999, P.188-190

⁶ 李泰鎭 교수는 「15·6 세기 신유학 정착의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15·6 세기의 사회·경제적 측면의 성과를 토대로 신유학(성리학)이 학문적, 사상적 차원으로 개화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⁷ 金哲子, 「朝鮮初期의 良賤不婚에 關한 研究」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하던 사람들로, 15세기부터 형성되어 조선 후기에는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기술관 및 향리, 서리, 토관, 군교(軍校), 역리(驛吏) 등의 경외(京外) 아전과 양반에서 격하된 서얼 등이 해당한다.

양인은 노비(奴婢)와 함께 비지배신분층을 형성한 존재다. 이들은 법제적으로 천인층과는 엄격히 구별되며 평민, 서민, 상인(常人), 상민(常民) 등의 용어로 표현되기도 한다. 양인층은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며, 이 밖에 상인(商人)도 여기에 포함된다.

천민은 사회의 가장 낮은 신분층에 속하던 사람들이다. 대개 대대로 당시 천역이던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면서 착취와 천대를 받던 노비, 백정, 장인바치 등을 이른다.

조선왕조는 엄격한 신분제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사회로서 사람의 신분을 부모님의 출신 계급에 따라 규정하였다. 고려의 종모법(從母法)⁸을 계승한 조선조는 초기에 노비의 인구를 증가시키려는 목적으로 이 법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양인의 수를 줄임으로서 군역 부담의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후 바로 종부법(從父法) 시행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종부법이 시행된 후 공천(公賤)⁹이 줄어들고 인륜을 어지럽히는 등의 여러 폐단이 일어나자, 결국 1432년(세종 14) 이 법을 폐지하고 이전의 종모법을 다시 채택하였다.

그리하여 16세기에 들어와서도 조선에서 사람의 신분을 판정할 때 주로 어머니의 출신을 참조하였다. 이 시기에 생활했던 몇 명의 여성, 즉 신사임당, 황진이, 이옥봉은 각자의 출신에 따라 다른 신분계층에 속했으므로 결혼을 할 때 자기의 계층이나 신분에 맞춰서 대상을 선택해야 했다.

우선, 신사임당의 경우를 살펴보자. 신사임당은 연산군 10년, 외가인 강원도 강릉 북평촌(현 오죽헌)에서 아들 없는 집안의 다섯 딸 중 둘째 딸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신명화(申命和)라는 이름의 선비였고, 어머니는 용인 이씨 집안의 선비인 이사온(李思溫)의 딸이었다. 용인(龍仁) 이씨와 평산(平山) 신씨는 모두 문과 급제자를 지속적으로 배출하면서 중앙으로 진출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역에서 명문거족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런 사대부 아버지와 정부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신사임당은 적녀(嫡女)로서 19살 때인 1522년 덕수(德水) 이씨 원수(元秀)와 결혼하였다. 덕수 이씨도 대단한 가문이고 이원수도 그 집안의 적자(嫡子)였다.

다음으로 서녀(庶女)로 태어난 이옥봉의 경우를 보자. 조정만(趙正萬)의 「이옥봉 행적(李玉峰行蹟)」에 보면 이옥봉은 이봉(李逢)의 서녀로 태어났다. 이옥봉의 아버지인 이봉은 선조(宣祖, 1567-1608)의 생부(生父)인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의 후손이다. 그는 문장가로 유명하고 옥천군수(沃川郡守)와 괴산군수(槐山郡守)를 지냈다. 그런데 이런 왕실 후손인 아버지를 갖은 이옥봉은 왜 다른 사대부 집안의 정부인이 되지 못했는가? 이옥봉의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양민이나 중인으로 추정된다. 그때의 종모법에 따라 이옥봉의 신분은 서녀였다. 그녀는 당시의 서류금고법(庶流禁錮法)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양반의 정실(正室)이 되지 못하고 소실(小室)이 될 수 밖에 없었다. 1564년 이옥봉은 진사시험에 정원으로 급제한 조원(趙瑗)의 첩(妾)으로 시집을 갔다.

⁸ 종부와 종모가 핵심인데, 부는 아버지 부, 모는 어머니 모를 쓰니, 노비가 되느냐 마느냐는 아버지 신분을 따르는 경우와 어머니 신분을 따르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이다.

⁹ 죄를 지어 종이 되거나 속공(屬公)되어 관아에 속하게 된 중.

마지막으로 천녀(賤女) 황진이(黃進士)의 신분을 고찰해보자. 황진이의 출생에 관한 문헌 기록에 의하면 황진이는 ‘황진사(黃進士)의 서녀’라는 설과 ‘맹녀(盲女)의 딸’이라는 설로 양분되어 있다. 양쪽 이설을 종합하여 볼 때 황진이의 아버지는 양반으로 볼 수 있으며, 어머니는 여러 아낙네와 어울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한 것으로 보아 양반가의 규수(閨秀)는 아니었을 것이고 서민 이하의 신분이었을 것이다. 당시의 종모법에 따르면 천한 여인이 소생한 여자아이는 천민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일 어머니가 기생이라면 여자애도 성년이 되어 기생으로 기적(妓籍)에 올려야 했다. 어머니의 천한 신분 때문에 황진이가 기생의 길을 걸은 것도 운명이었던 것이다.

2) 가부장적 유교 전통 속의 여성들

조선 전기 여성의 지위와 사회적 위상은, 여성의 불평등 자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교적인 전통 여성상과 많이 달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 여성의 이미지는 조선 후기에 유교 사상이 사회 전반에 정착된 후 형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편린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강하고, 마치 예전부터 있어왔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실은 고려 말기부터 조선 전기까지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해왔다. 예를 들어서 당시의 족보 기재 방식에 의하여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나이순으로 기재했다는 것, 균분상속(均分相續)¹⁰, 남귀여가혼, 윤회봉사(輪廻奉祀) 등을 통해서 여성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선 전기부터 성리학의 보급에 따라 일부 사대부들은 고려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면서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였다. 첫 번째는 불교의 타락이고, 두 번째는 여성들의 자유분방함이었다. 그래서 이런 성리학을 지지한 사대부들은 억불숭유(抑佛崇儒) 정책을 폈고 여성들에게는 사회적·윤리적으로 규제를 가하였다.

그러면 유교는 과연 여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자. 가부장적 유교의 전통 속에서 일반적인 남녀의 관념은 본래적으로 생리적 그리고 기능적 상이점이 존재한다고 본다. 인간적인 차원에서 남녀는 어디까지나 從적 질서가 성립되어야 한다. 천(天)이 지(地)에 앞서듯이 男(夫)이 女(婦)에 앞서고 君(君)이 臣(臣)에 앞선다는 관념은 이때 이것은 인간이 개조하거나 위배할 수 있는 사회적 규율이 아니라 하나의 선험(先驗)적 혹은 자연적규율이라는 것이다.¹¹

그리고 조선 시대 법전인 『경국대전』에 여성들의 재가(再嫁)금지과 외출규제들이 법제화되어 16세기쯤이면 다음과 같은 유교의 출가외인(出嫁外人), 여필종부(女必從夫), 일부종사(一夫從事), 칠거지악(七去之惡), 삼종지도(三從之道)의 풍습이 습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조선 중기 이후의 여성들은 혼인이전부터 혼인 이후 사망하는 날까지 남자에게 종속되었다. 가정 내에서도 여성의 지위가 남성에 종속되어 있는 까닭에 필연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도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남자의 지위에 따라 종속변수적 차원에서 규정되었다.

3. 16세기 ‘親迎制’의 도입과 혼인제도의 변화

¹⁰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 대상자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에게 같은 분량을 상속해 주는 일.

¹¹ 朴貞順, 「朝鮮王朝 魂俗을 中心으로 한 女性地位考」

(1) 『朱子家禮』의 ‘親迎制’란 무엇인가

그리하여 성리학적인 유교 국가로 출발한 조선 왕조에서는 국가의 모든 문물제도를 비롯하여 풍속이나 관습 등 일반 사회 생활의 관행까지도 중국과 예제를 일치시키려는 이념이 강요되었다. 『주자가례』에 의한 관혼상제의 예교화(禮教化) 운동이 곧 그것이다.

『주자가례』에서는 12세기 남송의 사대부를 대상으로 사가의 예, 천하의 통예를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인간의 통관의식인 관혼상제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의 생활의식을 정립해 가족간의 유대 강화, 질서유지, 그리고 사회 풍속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사회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¹²

조선초기의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정치이념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관혼상제를 『주자가례』에 의하여 정비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중국의 예의가 혼례로부터 비롯된다고 여겼던 사대부들은 조선의 혼례 풍속도 무조건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중국의 『예기(禮記)』에 따른 혼례는 6례의 절차, 즉 納采(납채는 채택하는례이다), 問名(女를 낳은 母의 名과 氏를 묻는다), 納吉(吉을 얻도록 점을 쳐서 드리는 것), 納徵(納幣하여 혼인의 증거로 삼는 것), 請期(혼인할 날짜를 청하는 것), 親迎를 거쳐서 성립하는 것이다. 남송 성리학 大儒 주희(朱熙)가 주로 『禮記』를 참조하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의 편리함까지 고려하여 다시 6례에서 4례를 선정하였고 그것이 바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친영(親迎)이다. 그리고 성리학을 추종한 한국은 반드시 6례를 따르지 않고 『주자가례』의 4례를 따랐다.

특히 4례 가운데 親迎의 예는 혼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여 남자의 집에서 혼례를 올리고, 그 이후로부터 신부는 남편의 집에서 계속 생활하게 됨을 뜻했다.

그리고 親迎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하루 전날에 여가에서 사람을 시켜 신랑방을 꾸며 놓고, 이튿날 날이 밝으면 신랑집에서는 방안에서 위폐를 설치하고, 여가에서는 밖에다 준비를 하고, 초혼(初婚)에 신랑이 성대하게 옷을 차려 입고,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초례(醮禮)를 치르고 아들에게 명하여 맞이하게 한다.

신랑이 나가서 말을 타고 여가에 이르러 차례를 기다린다. 여가 주인이 사당에 고하고, 딸의 초례를 치르도록 명한다.

주인이 나아가 사위를 맞아들여서 전안(奠雁)한다.

母가 딸을 받들고 나가서 수례에 오르면, 사위가 말을 타고 먼저 돌아가서 신부를 인도해 들고, 신랑 신부가 교배(交拜)한다.

자리에 나아가 음식을 마치고 신랑이 나간다.

신랑이 다시 들어와서 옷을 벗고, 촛불이 나가면, 주인이 손님에게 예(禮)한다. 이튿날에 일찍 일어나서 신부가 시부모를 보는데, 이를 구고례(舅姑禮)라 한다. 신부가 여러 가지 집안 어른들을 뵈는데, 3일에 주인이 신부를 사당에 배알케 하고, 다음날에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부모를 뵈고, 다음에 신부집 친척들을 뵈는데, 신부집에서는 사위의 예(禮)를 몇몇한 의식대로 한다.¹³

¹² 都賢喆, 「高麗後期 朱子學 수용과 朱子書 보급」, 『동방학지』 77-79, 1975, P.215

¹³ 李能和·曹壽鶴 譯, 「朝鮮民庶婚制」, 金宅奎·成炳禧編, 『韓國民俗研究論文選』, 一潮閣, 1982, P.208
『朱子家禮』에서 親迎에 대한 기록이 다음과 같다. 前期一日, 女氏使人張陳其壻之室。厥明, 壻家設

(2) ‘親迎制’ 시행 이전과 이후 : 무엇이 달라졌는가?

1) 시행 이전 : 신사임당

조선의 건국이념은 유교인데 유교는 男女有別 사상을 강조하였다. 특히 당시 유학자들은 혼례가 삼강지본(三綱之本)이고 정시지도(正始之道)라고 여겼다. 중국의 모든 문물제도를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조선왕실은 태종(太宗, 1400-1418) 때부터 전통 혼속인 남귀여가혼의 혼인 절차 대신 친영례의 혼인 절차를 실시하려고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태종 15년 성녕대군(誠寧大君) 종(種)이 대호군(大護軍) 성억(成抑)의 딸을 친영의 예로 맞아 들였다.¹⁴ 이는 한국 최초로 친영이 행해진 기록이다. 세종(世宗, 1418-1450) 때에 이르러 선대의 태종보다 친영례 거행에 대한 태도가 더 신중해졌다. 세종은 옛 풍속을 바꾸려면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을 통찰하였던 까닭에 우선 왕실에서의 술선수범을 실시하였으며 서민들에게 친영에 대한 홍보 및 계몽도 해 주었다. 친영이 궁중에서 의식으로서 성대하게 행해 진 것은 중종(中宗, 1506-1544) 때였다. 중종 12년, 문정왕비(文定王后)를 맞이할 때 친히 태평관(太平館)에서 친영례를 거행하였다.¹⁵ 이것이 단서가 되어 왕실과 사대부가에서 차차 친영의 예가 행해졌으나,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가서 사는 풍속은 여전히 남아 있어서 문제가 되었다.¹⁶

중종 시대를 살았던 신사임당은 1522년(중종 17년)에 이원수와 결혼한 후 남편의 동의를 얻어 시집에 가지 않고 친정에 머물렀다. 기록에 의하면 사임당은 38세 때 서울 시집에 정착하기까지, 혼인 후 근 20년 동안 강릉을 주요 거처로 하면서 봉평, 파주 등을 오가며 지냈다. 여기에서 알수 있듯이 신사임당을 비롯한 16세기 전기를 살았던 여성은 결혼 후에도 장시간 친정에서 생활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사임당은 뛰어난 작품을 남긴 화가라는 점과 조선의 대학자이자 정치가인 율곡 이이(李珣, 1536-1584)의 어머니라는 점뿐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녀의 생애를 다시 돌아보면 그녀가 조선 혼속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목격한 증인임을 알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유교적 예제보다도 전통적인 관습이 생활문화를 지배하였다. 앞에 언급하였듯이 남귀여가혼이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제사나 재산상속 문제에 있어서도 여성의 권한이 조선 후기보다 컸다. 제사도 여자 형제가 참여했음은 물론 남자형제가 없을 때에는 여식(女息)이 제사를 전담하였고 심지어는 외손봉사(外孫奉祀)까지도 했다. 특히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때 서열차별이 있었지만 성별차별은 전혀 없었다. 여자가 결혼해도 남자형제와 똑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남편 혹은 시가의 재산으로 흡수되지 않고 어디까지나 자기의 재산으로 남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조선 전기에 살았던 여성은 경제적인 면에서 지위가 훨씬 높았다.

位于室中。女家设次于外。初昏，婿盛服。主人告于祠堂。遂醮其子而命之迎。婿出，乘马。至女家，俟于次。女家主人告于祠堂。遂醮其女而命之。主人出迎，婿入奠雁。姆奉女出，登车。婿乘马先妇车。至其家，导妇以入。婿妇交拜。就坐饮食毕，婿出。复入，脱服，烛出。主人礼宾。明日若冢妇，则馈于舅姑。舅姑飨之。三日，主人以妇见于祠堂。明日，婿往见妇之父母。次见妇党诸亲。妇家礼婿如常仪。

¹⁴ 『태종실록』 권 28, 태종 15년 12월 조

¹⁵ 『중종실록』 권 28, 중종 12년 7월 19일

¹⁶ 『중종실록』 권 30, 중종 12년 11월 23일

신사임당의 집안도 모계 가족의 재산을 계속 상계하였다. 신사임당의 어머니 이씨부인과 외할머니 최씨부인은 다 외동딸이고 집안 재산도 많아서 결혼 후에 친정에서 생활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집안은 3 대 째 처가살이를 하였다. 이는 친영례나 장자장속 같은 성리학적 규범과 제도가 자리잡기 이전인 16 세기 조선시대 양반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신사임당의 가족사는 당시로서도 흔치 않은 사례에 속한다.

신사임당의 처가살이와 외가의 영향력에 대한 종합적인 전모를 드러내기 위하여 그녀가 남긴 몇 편의 시 작품과 일화(逸話), 율곡 이이가 쓴 「선비행장(先妣行狀)」, 묘비명 등을 살펴보자.

이이의 「선비행장」에 따르면 신사임당은 결혼 몇 달 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친정에서 3 년상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왔다. 3 년 동안 아버지를 위하여 시묘살이를 하고 신부의 예로써, 즉 친영례의 우귀(于歸)를 행하려고 시어미니 흥씨를 잠깐 찾아뵈러 갔다. 그러나 그녀는 때때로 강릉에 가서 홀로 사는 어머니를 위로해 드리기도 했다. 이이의 기록에 따르면 1524 년 ‘자당께서 임영(臨瀛:강릉의 고호)으로 근친(覲親)을 가셨는데 돌아오실 때에 자친과 울면서 작별을 하고 대령 중턱에 이르러 북평 땅을 바라보고 백운(白雲)의 생각을 건딜 수 없어 가마를 멈추게 하고 한동안 쓸쓸히 눈물을 짓고 다음과 같이 시를 지었다.’

慈親鶴髮在臨瀛(머리 하얀 어머니를 임영에 두고),
身向長安獨去情(장안을 향하여 홀로 가는 이 마음).
回首北邙時一望(고개 돌려 북촌 바라보노니),
白雲飛下暮山靑(흰 구름 날아 내리는 저녁 산만 푸르네).¹⁷

이 시를 통해서 신사임당은 고향에 대한 향수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생생하게 표현하였다. 그리고 그녀가 지은 시조들에는 대부분 친정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잘 드러났다. 1522 년 결혼 후 신사임당은 경기도 파주의 시택과 강원도 강릉의 친정집을 오가면서 친정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그녀의 절절한 효성을 표현한 이 작품들은 그 20 년 동안 친정 어머니와 같이 생활하던 모습과 정을 기록하였다.

친정 집안에 아들이 없어서 신사임당의 아들인 이이가 외할아버지의 제사를 맡고 제사문과 묘비문도 작성하였다. 그리고 든든한 친정 집안을 갖춘 신사임당은 남편 이원수와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이의 기록에서 이원수는 성격이 호탕하여 세간살이에 관심이 없었으므로 가정 형편이 매우 어려웠다. 이에 신사임당은 남편의 집안을 잘 다스리고 생활 속에서 남편과도 자주 대화를 하였다.

『동계만록(東溪漫錄)』을 통해 전해져오는 신사임당과 그 남편의 대화 한 토막을 보자. “내가 죽은 뒤에 당신은 다시 장가들지 마시오. 우리가 7 남매나 두었으니까 더 구할 것이 없지 않소. 그러니 『예기』의 교훈을 어기지 마시오.” “공자가 아내를 내보낸 것은 무슨 예법이요?” “공자가 노나라 소공 때에 난리를 만나 제나라 이계라는 곳으로 피난을 갔는데 그 부인이 따라가지 않고 바로 송나라로 갔기 때문이요. 그러나 공자가 그 부인과 동거하지 않았다 뿐이지 아주 나타나게 내쫓았다는 기록은 없소.” “증자가 부인을 내쫓은 것은 무슨 까닭이요?”

¹⁷ 金智勇 譯,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증자의 부친이 찢 베를 좋아했는데, 그 부인이 베를 잘못 짜서 부모 공양하는 도리에 어김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것이요. 그러나 증자도 한번 혼인한 예의를 존중해서 다시 새장가를 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주자의 집안 예법에는 이같은 일이 없소?” “주자가 47 살 때에 부인 유씨가 죽고, 맏아들 숙은 아직 장가들지 않아 살림을 할 사람이 없었건마는 주자는 다시 장가들지 않았소.”

이상의 시문과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가지고 있던 신사임당에 대한 인상과 실상이 많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근 20 년을 친정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아이를 키우며 자기의 예술 세계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유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재취(再娶)를 금지하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고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리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평등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2) 시행 이후 : 이옥봉, 허난설헌

중중은 친영제를 강력히 시행하였지만 명종(明宗, 1545-1567) 이후에는 왕실에서만 친영이 이루어졌고 동시에 구속과 친영제의 절충안인 ‘반친영(半親迎)’이 민간에서 행해졌다.

반친영은 구속에 의하여 여가(女家)에서 합근(합짚)의 의(儀)를 이루고 부가(婦家)에 머무른 후, 그 다음 날에 부(婦)를 서가(婿家)에 영입(迎入)하여 시부모를 뵈는다는 것인데, 때로는 여가(女家)에 머무른 지 3 일 만에 서가(婿家)에 와서 구고례(舅姑禮)를 행하게 되어, 이를 삼일대반(三日對飯)이라고 속칭하게 되었다.¹⁸ 이와 반대로 혼인 당일에 신랑 집에서 신부를 맞아들이는 것을 진친영(眞親迎)이라고 일컬었다. 조선조 명종 이후에는 왕실 및 몇몇 사대부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친영이 행해지지 못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반친영 혹은 삼일대반으로 일컬어지는 혼례가 시행되었다. 그래서 명종대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시작한 초기 단계로 남귀여가혼을 시행하던 사회에서 차츰 반친영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¹⁹

친영제와 남귀여가혼의 차이는 단순히 혼례를 산랑집에서 치르는가 신부집에서 치르는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친영제와 남귀여가혼은 각각 부방거주(夫方居住)라는 중국의 혼속과 처방거주(妻方居住)라는 조선의 혼속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어서, 친영제 실시는 거주제를 바꾸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개(變改)를 동반하는 것이었다.²⁰ 이런 명종대에 실시한 반친영을 통해서 조선 여성들은 결혼식을 마친 후 시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시대를 살았던 여류시인 허난설헌은 어린 시절에 외가에서 자라고 부모형제의 사랑을 지극히 받으면서 15 세(1577년, 宣祖 10년)에 5대에 걸쳐 문과에 급제한 세도가(勢道家) 안동김씨(安東金氏)의 김성립(金誠立)에게 출가하게 되었다. 결혼한 뒤 얼마간은 새로운 생활에 대한 흥미와 신혼의 단꿈을 노래한 흔적(江南曲中제 3수)도 나타난다. 그러나 신혼의 단꿈은 얼마가지 못하였고 천부적인 자질과 자아가 강한 개성을 지닌 허난설헌은 극심한 고부간의 갈등을 겪게 되었다. 전형적인 사대부사회의 특징을 지녔고 한량이었던 남편

¹⁸ 『增補文獻備考』 권 89, 禮考 36, 私婚禮

¹⁹ 張炳仁, 『朝鮮前期 婚姻制와 性差別』, 일지사, 1997.

²⁰ 陳賢雅, 「朝鮮前期 婚姻制度로 본 女性의 地位」,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김성립은 기방을 드나들며 풍류를 즐겼고, 아내를 경원(敬遠)하였으며 그녀 또한 남편에게 큰 애정을 가지지 못하였다. 더구나 시어머니는 시기와 질투로 그녀를 학대하였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던 자식도 연차로 잃고 삶의 의욕도 함께 잃어 버려서 시를 지으며 나날을 보내다가 27 세로 요절했다.

명문 출신인 허난설헌은 시집에서도 정실 부인인데 왜 남편과 시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지 못했는가? 왜냐하면 처가살이보다 시집살이는 여성에 대한 유교적인 제약이 더 많고 부덕(婦德)이란 요구가 한층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시집살이 중심의 삶의 조건은 여성으로 하여금 정체성의 기반을 자신의 뿌리가 아닌 남편 가문의 며느리에서 찾도록 하였다. 그리고 여성이 남편 가문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가문의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 그러나 허난설헌이 낳은 아들과 딸은 모두 병에 걸려서 연차로 죽었다. 자식을 잃은 아픔을 겪었던 허난설헌은 다음의 시를 짓고 자식들의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한다.

去年喪愛女(지난 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今年喪愛子(올해엔 아끼던 아들을 보내었네).
哀哀廣陵土(슬프고 슬프다, 이 광릉땅에), 雙墳相對起(두 개의 무덤이 마주 서 있네).
肅肅白楊風(백양(白楊)나무 숲엔 쓸쓸히 바람 불고), 鬼火明松楸(도깨비불은 송추(松楸)에서 번쩍인다).
紙錢招汝魂(지전(紙錢)으로 너의 혼을 부르고), 玄酒奠汝丘(현주(玄酒)를 너의 무덤에 뿌린다).
應知兄弟魂(응당 너희 남매의 혼은), 夜夜相追遊(밤마다 서로 좇으며 놀리라).
縱有腹中孩(비록 뱃속에 아이가 있다한들), 安可冀長成(어찌 장성하기를 바랄 수 있으리).
浪吟黃臺詞(아무렇게나 황대사(黃臺詞) 읊으며), 血泣悲吞聲(피눈물 흘리며 소리낮춰 슬피 운다).²¹

남편 가문내에서의 안정적인 입지 확보를 위해 아들 출산을 해야 했던 허난설헌은 기방에 들락날락하는 남편을 한심하게 여겨 그를 경시하였다. 그리고 현실 세계를 도피하려고 문학 세계에 몰두한 허난설헌은 부덕을 중시한 시어머니에게서도 엄청난 굴욕을 당했다.

이 시기에 허난설헌과 같은 시집살이를 시작한 이옥봉(1567-1608)은 혼인 생활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그녀는 허난설헌과 달리 서녀 출신이라 정부인이 될 수 없었고 결국 다른 사대부의 첩(妾)으로 시집갔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첩은 처(妻)보다 훨씬 지위가 낮았다.

『조선여속고(朝鮮女俗考)』에서 축첩지속(蓄妾之俗)에 관하여 많은 사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첩에는 두 계급이 있었으니, 양첩(良妾)과 천첩(賤妾)으로 나누어진다. 양첩은 양가의 딸을 불러 첩으로 삼은 것으로 혼의(婚儀)가 취처혼례(娶妻婚禮)와 같고 다만 신랑이 쓰는 사모를 두뿔나게 접어서 차별의 뜻을 보일 뿐이었다. 천첩은 사비(私婢), 관비(官婢), 국비(國婢) 등 공사(公私)의 천비(賤婢)나 창기(娼妓)가 첩이 된 자를 일컫는다.²² 첩은 남자의 지위, 신분과 관계없이 비천한 대우를 받아야 했다. 남편은 물론 본처(本妻)도 여군(女君)이라 하여 은의(恩義)로 만들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멸시, 학대받던 서얼(庶孽)을 낳아야 했다.

이옥봉은 비록 첩의 딸이었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에게 글과 시를 배워서

²¹ 金智勇 譯,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²² 李能和, 『朝鮮女俗考』, 大洋書籍, 1973.

글재주가 매우 뛰어났다. 결혼할 나이가 되어 이옥봉은 어느날 조원(趙瑗)이라는 젊은 선비를 만나 열렬한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옥봉의 사랑을 알게 된 아버지 이봉은 조원을 찾아가 딸을 첩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간청했지만, 이미 결혼한 몸인 조원은 거절했다. 딸을 너무도 사랑했던 이봉은 체면을 따지지 않고 조원의 장인인 이준민에게 도움을 청했다. 결국 이준민의 주선(周旋)으로 옥봉은 소원을 이루었다.

조원은 이옥봉을 받아들이면서 여인이 시를 짓는 것은 지아비의 얼굴을 깎아내리는 일이라며 시를 쓰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라고 했다. 그녀는 맹세를 하고 시를 접고 살아갔다. 그러던 어느날 그녀가 써준 시 한편이 관가의 사법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필화사건'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조원의 화를 사게 되어 그녀를 결국 친정으로 쫓아냈다. 그 후 그녀는 애절한 마음을 시로 읊고 또 읊었다.

남편 조원을 너무나 그리워해서 몽혼(夢魂)이란 시를 지었다.

近來安否問如何(요즈음 어떻게 지내시나요),
月到紗窓妾恨多(사창에 달이 뜨니 한만 서려요).
若使夢魂行有跡(꿈 속에 오고간 길 흔적이 난다면),
門前石路半成沙(그대 문 앞 돌길은 모래가 되겠네요).²³

이런 애절한 심정을 담은 시를 읊을 때 우리는 이옥봉의 남편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상상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옥봉의 남편인 조원은 전통적인 사대부여서 그런지 여자가 시문을 짓는 것이 박덕(薄德)이라고 여겼으므로 결국은 옥봉을 다시 찾아주지 않았다. 가정에서도 이옥봉은 조원의 정실 부인이씨(李氏)를 잘 도와 주지 못했고 다른 첩과의 사이 또한 별로 화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군의 신뢰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말았다. 남편과 정실 부인에게서 (이중)二重 학대를 받았던 이옥봉은 시집에서 많은 풍상고초를 겪고 친정으로 내쳐졌다.

4. 결론

조선의 개국 세력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한 사회 개혁을 위해 조선 사회 전체를 교화의 대상으로 삼고 유교화(儒敎化)를 추진하였다. 유교는 주로 예교(禮敎)에 의존하여 명분론과 차별을 강조하였다. 이런 유교, 즉 성리학을 국교(國敎)로 여겼던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정치적 지도이념이나 체도의 측면에서 성리학적 의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성리학적인 유교 국가로 출발한 조선 왕조는 국가의 모든 문물제도(文物制度)를 비롯하여 풍속이나 관습 등 일반 사회 생활의 관행까지도 중국의 예제(禮制)에 일치시키려는 이념이 강요되었다. 『주자가례』에 의한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교화 운동이 곧 그것이다.²⁴

국가는 강력히 『주자가례』에 따른 의례 실행을 시도하였지만 민중의 일상생활에 뿌리를 두고 있는 풍속 습관의 변화는 정치제도의 경우처럼 단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16 세기에 들어와서야

²³ 金智勇 譯,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²⁴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婿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8, P.145

『주자가례』와 『소학』 등 조선시대 사회 윤리 실천규범서가 보통 양반 사대부들 사이에 겨우 정착되었다.

『주자가례』의 영향 속에 조선의 관혼상제 가운데 혼례는 변화에 제일 긴 시간이 걸렸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조선의 전통 혼속 남귀여가혼의 역사는 고구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1000 여년 동안 지속되었으며 한반도 전역에 걸쳐 널리 퍼졌던 보편적인 남귀여가혼은 겨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주자가례』의 혼례 철차인 친영례와 충돌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성리학이 조선에 정착되면서 사대부들은 친영례를 중심으로 하는 혼례와 남귀여가혼 혹은 서류부가혼의 상이점에 주목하게 되었다. 조선 태종대에 공식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친영실시론은 세종대에 이르러 첫 번째 클라이맥스를 이루었다. 그 여력(餘力)이 문종, 단종, 세조, 성종, 연산군에 미쳤고, 특히 성종조에서 일차적인 정리기를 맞았다. 다음으로 중종대에 가서 또 하나의 절정을 이루고, 명종, 선조로 넘어가면서 조선의 신구양속(新舊兩俗)의 절중(折中) 형태인 반친영이 잉태된 것으로 파악된다.²⁵

그리고 혼인 양식이 바뀌는 동안 여성의 생활 양식이나 가정에서의 지위도 변화되었다. 특히 친영례 실시 이후 조선 여성들의 전통적인 처가살이는 시집살이로 변화하였다. 지금까지 16 세기 전기와 후기에 생활하였던 몇 명 여성들을 사례로 들어 혼속과 거주양식의 변화가 여성의 생활에 어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조선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었다. 고려 말기부터 조선 전기까지의 여성들은 친정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반친영례를 실시한 후, 즉 조선 16 세 중기 이후 여성은 결혼식을 마친 후 시집에 가서 시집살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중국에서 전입된 『주자가례』가 조선 사회에 보급됨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가정적 지위 역시 현저히 떨어지고 말았다.

<참고문헌>

1. 자료

『三國史記』

『三國志』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上)禮典 ‘三峰集’

『朱子家禮』

『東溪漫錄』

『增補文獻備考』 권 89, 禮考 36, 私婚禮

『栗谷全集』 권 18, 先妣行狀

2. 단행본

金宅奎·成炳禧, 『韓國民俗研究論文選』, 一潮閣, 1982.

金用淑, 『朝鮮女俗史』, 민음사, 1989.

金智勇 譯, 『한국의 女流漢詩』, 여강출판사, 1991.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婿留婦家婚俗을 中心으로-』, 高麗大學校

²⁵ 韓福龍, 「朝鮮時代 親迎制度의 전개과정」, 中央法學 제 9 집, 제 2 호.

民族文化研究所,1988.

李能和, 『朝鮮女俗考』, 大洋書籍, 1973.

張炳仁, 『朝鮮前期 婚姻制와 性差別』, 일지사, 1997.

崔在錫, 『韓國家族制度史研究』, 일지사, 1983.

3. 논문

김석근, 「대승불교에서 주자학으로」, 『정치사상연구』 1, 1999.

金哲子, 「朝鮮初期의 良賤不婚에 關한 研究」

都賢喆, 「高麗後期 朱子學 수용과 朱子書보급」, 『동방학지』 77-79, 1975.

朴貞順, 「朝鮮王朝 婚俗을 中心으로 한 女性地位考」

李泰鎭, 「15·6 세기 신유학 정착의 사회·경제적 배경」

李能和·曹壽鶴 譯, 「朝鮮民庶婚制」, 1982.

陳賢雅, 「朝鮮前期 婚姻制度로 본 女性의 地位」,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韓福龍, 「朝鮮時代 親迎制度의 전개과정」, 中央法學 제 9 집, 제 2 호.